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2018. 4.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년 4월 2일 (수)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4월 4일 (수)

4.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15조

5. 개정이유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주택분)의 일시(一時) 부과 가능 세액 범위 확대에 따른 법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당해 연도 세액을 1/2씩 나누어 부과 하는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음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7.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주택분)의 일시(一時) 부과 가능 세액 범위 확대에 따른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당해 연도 세액을 1/2씩 나누어 부과 함에 있어,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세법

종 전	현 행
<p>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2018. 4.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인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년 4월 2일 (월)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4월 4일 (수)

4.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5.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6. 주요 개정내용

가.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 자동계좌이체 납부시에만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전자송달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까지 확대하여 시행

현 행 (서울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개 정 (서울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제14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4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고지서 1장당	고지서 1장당
자동계좌이체	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이체
150원	150원
전자송달+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 전자송달+ 계좌 자동이체
500원	500원
	전자송달+ 신용카드 자동이체

나.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 명확화

- 현행규정은 『협동조합기본법』 상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 감면을 규정하여, 조직 변경 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설립조건이 되는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용어의 정의가 없어 해석상 혼란이 있어 지방세법 규정을 차용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서울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서울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제13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13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7.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액공제 확대를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종 전	현 행
<p>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p>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p>	<p>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p>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p>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